

# 협력사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 제 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STX 엔진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의 협력사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1. "협력사"라 함은 제품 생산용 자재로 당사의 제작사양(도면, 시방서) 또는 승인도에 의하여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2. "협력사 풀(POOL)"이라 함은 당사의 신규 협력사 등록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사 그룹을 말한다.
3. "협력사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사 풀(POOL)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사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사로 선정·등록된 회사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사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 3 조(협력사 선정기준)

1. 대상 협력사
  - A. 당사나 기존 협력사가 보유하지 않은 설비를 보유하고 당사가 발주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설비를 갖춘 당사가 거래를 필요로 하는 회사.
  - B. 당사와의 업무수행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회사.
2. 협력사 선정 및 등록 절차
  - A. 신규 협력사 선정·등록 시 대상 협력사를 방문하여 현장 실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실사팀 : 구매, 품질, 설계 및 환경안전 부문 실무지식 보유자
    - 실사준비 : 해당 협력사에 실사준비 자료를 사전에 발송한다.
    - 현장실사 : 실사팀은 사전에 발송한 협력사 평가서를 기준으로 각 항목을 점검하고 실사한다.
    - 승인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협력사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 B. 사내 용역회사, 1 회성 등록회사의 경우 협력사 평가에 의거 구매부서장 전결처리한다.
3. 협력사 등록 및 승인  
협력사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전산등록을 진행하며, 해당 협력사는 관련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A. 회사현황 (협력사 연혁/소개자료 등)
- B.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C. 보유면허증 사본(선급 및 품질인증 관련)
- D. 인감증명서
- E.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4. 협력사 선정결과 공개

심의결과 10 일 이내 별도 양식에 의거 협력사에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승인 불가 시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제 4 조(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사로 선정, 등록된 회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견적 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

- A.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 B. 상대방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 3 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 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C.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되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2. 최고가 필요한 경우

- A.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B. 납품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C.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물품의 가격을 인하 또는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3. 등록취소 절차

- 1) 협력사에 사전 최고 거래해지 공문을 발송
- 2) 업체의 이의신청을 위하여 업체 접수기준 15 일 이상의 회신기준 명기
- 3) 회신된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거래 해지 또는 지속 거래
- 4) 정해진 기간 내 미회신에 대해서는 거래 해지

제 6 조 (가이드라인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1. 04. 01 부터 시행한다.